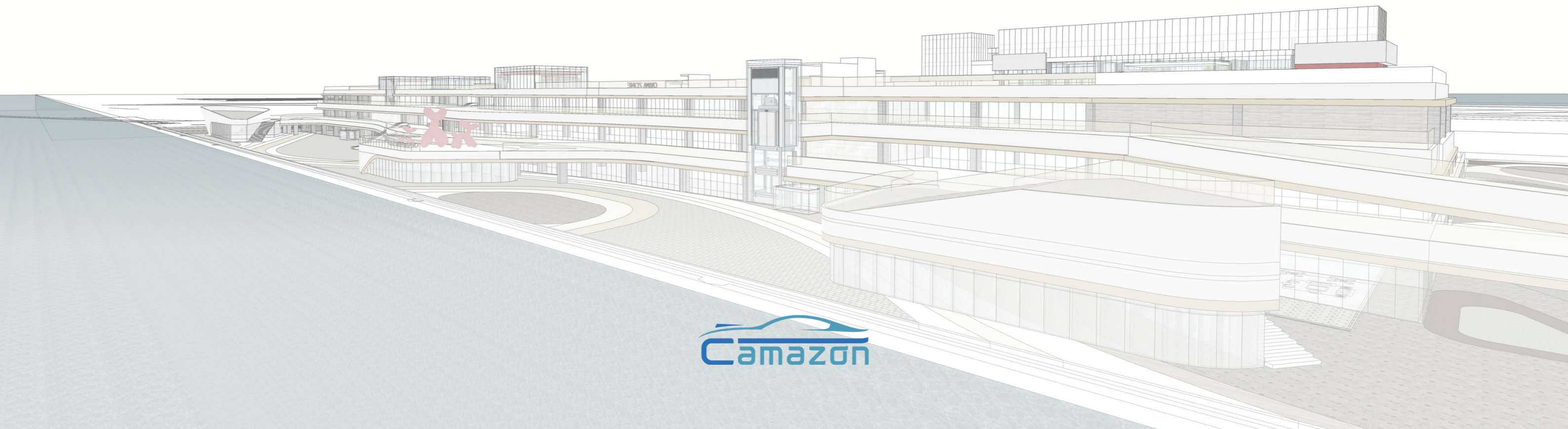


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

주민 설명회

2024. 04. 15





Contents

I . 사업의 개요

II . 환경현황,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

III . 질의 답변

01 사업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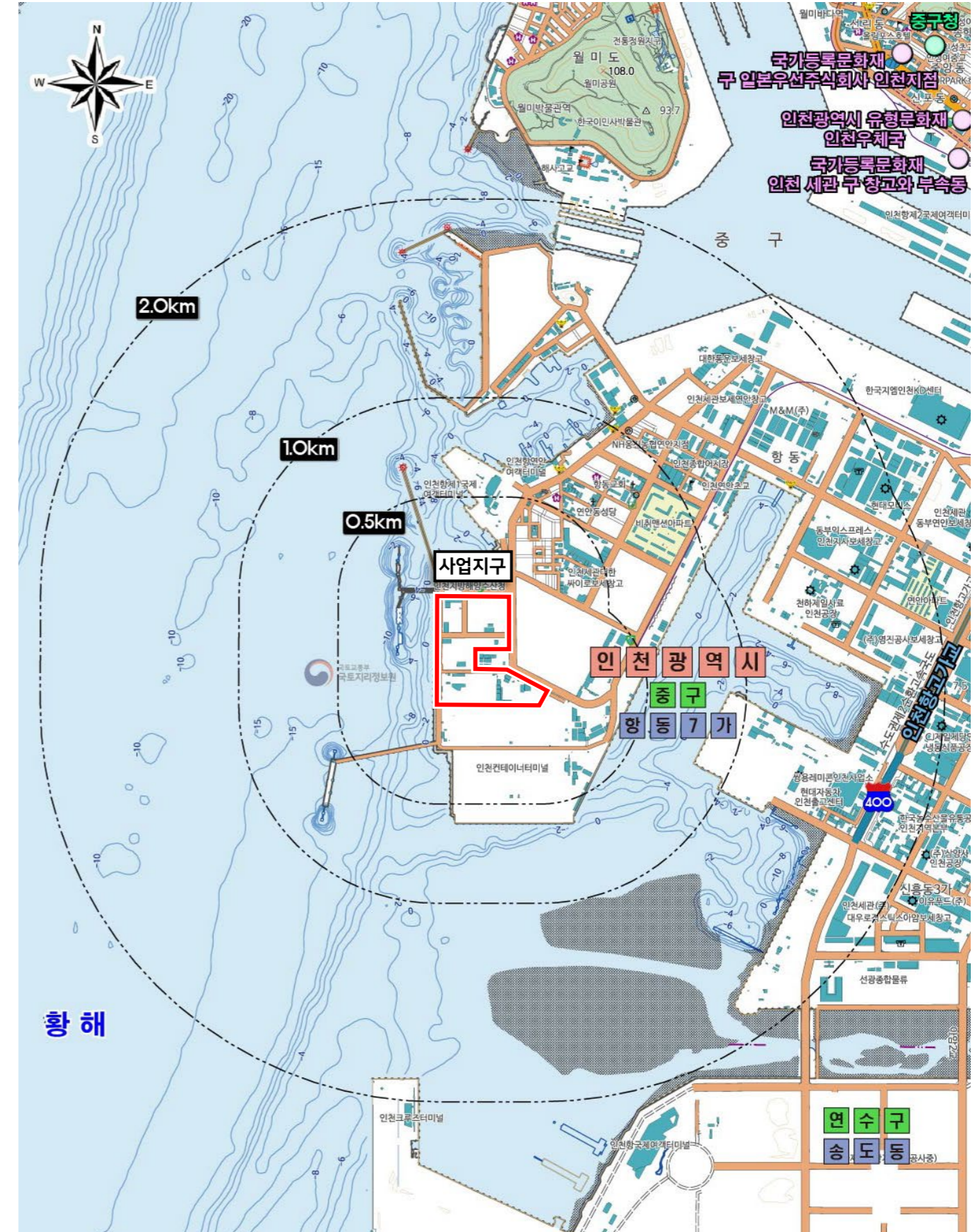
01 사업의 개요

사업의 개요

- 사업위치 :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-7번지 일원(남항 역무선 배후부지 일원)
- 사업면적 : 204,145㎡
- 사업기간 : 2023년 ~ 2026년
- 사업비 : 2,480억원
- 사업시행자 : 카마존(주)
- 승인기관 : 인천지방해양수산청

사업의 배경 및 목적

- 인천항은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 거점 항만으로 **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항만물류산업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**
- “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”은 친환경·첨단 중고자동차 수출 클러스터를 단계별(1단계~2단계)로 조성하는 사업으로, 수출 중고자동차 판매 등을 위한 공간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, **본 과업은 1단계에 해당**



01 사업의 개요

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○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[별표3]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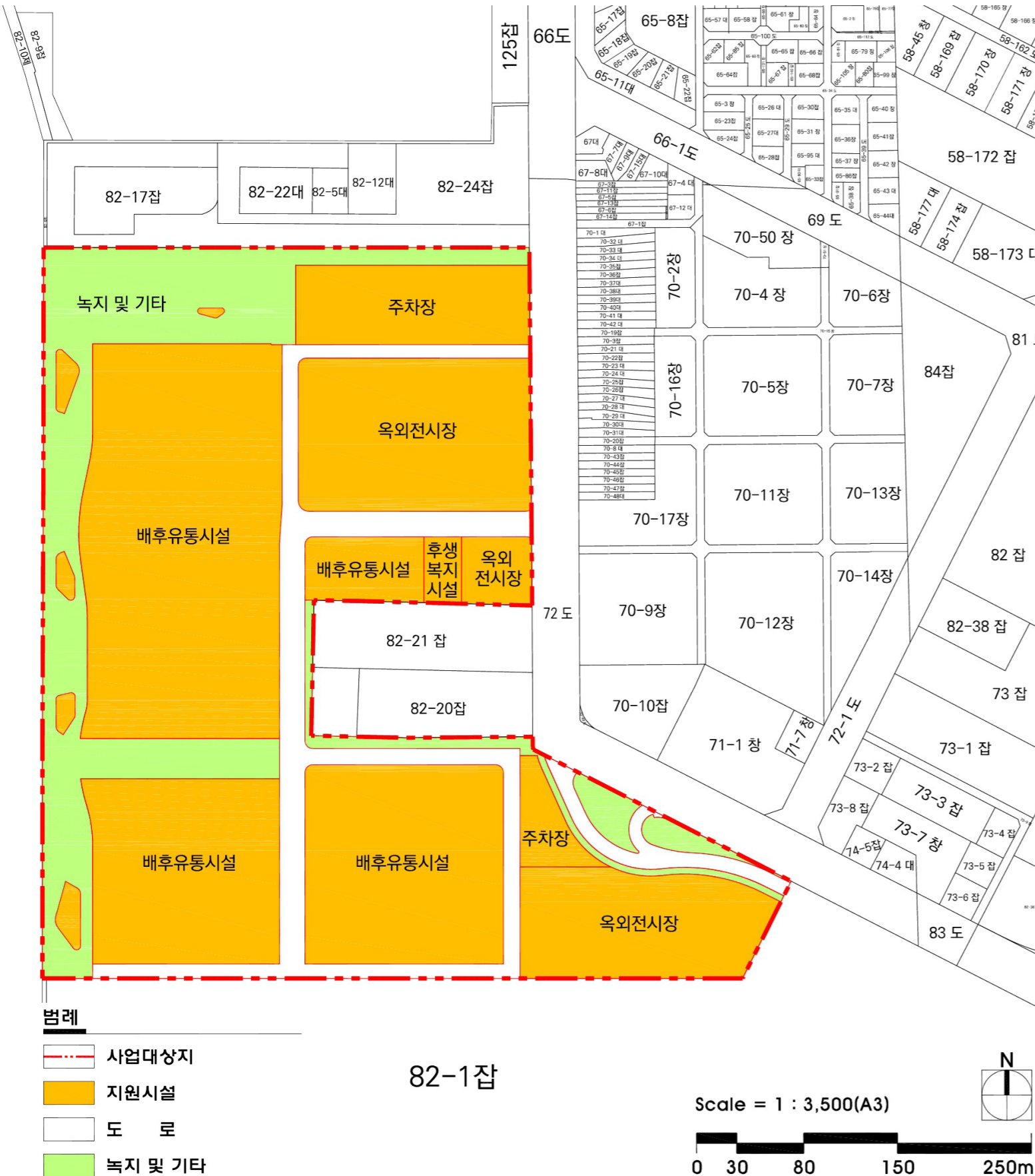
구분	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	협의 요청시기
4. 항만의 건설사업	나. 「항만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) 외곽시설(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) 2) 계류시설(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) 3) 그 밖의 항만시설(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,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)	가)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: 「항만법」제9조 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 사업의 고시 전 나)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: 「항만공사법」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)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: 「항만법」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전
검토 결과	○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[별표3]의 "4.항만의 건설 사업" 중 '3) 그 밖의 항만 시설' 에 해당함 ○ 사업면적 204,145.0㎡로 평가대상면적 15만㎡ 이상에 해당하여 평가 수행	

환경영향평가(약식) 절차



01 사업의 개요

토지이용계획



구분	면적(m ²)	구성비(%)	비고		
합계	204,145.0	100.0	-		
사업지구	지원시설	배후유통시설	90,827.8	44.5	-
		옥외전시장	36,802.4	18.0	-
		주차장	13,143.1	6.4	-
		후생복지시설	1,402.5	0.7	선원복지회관 존치
		소계	142,175.8	69.6	-
		녹지 및 기타	40,116.9	19.7	보행로, 위령비, 체육시설 포함
도로	21,852.3	10.7	-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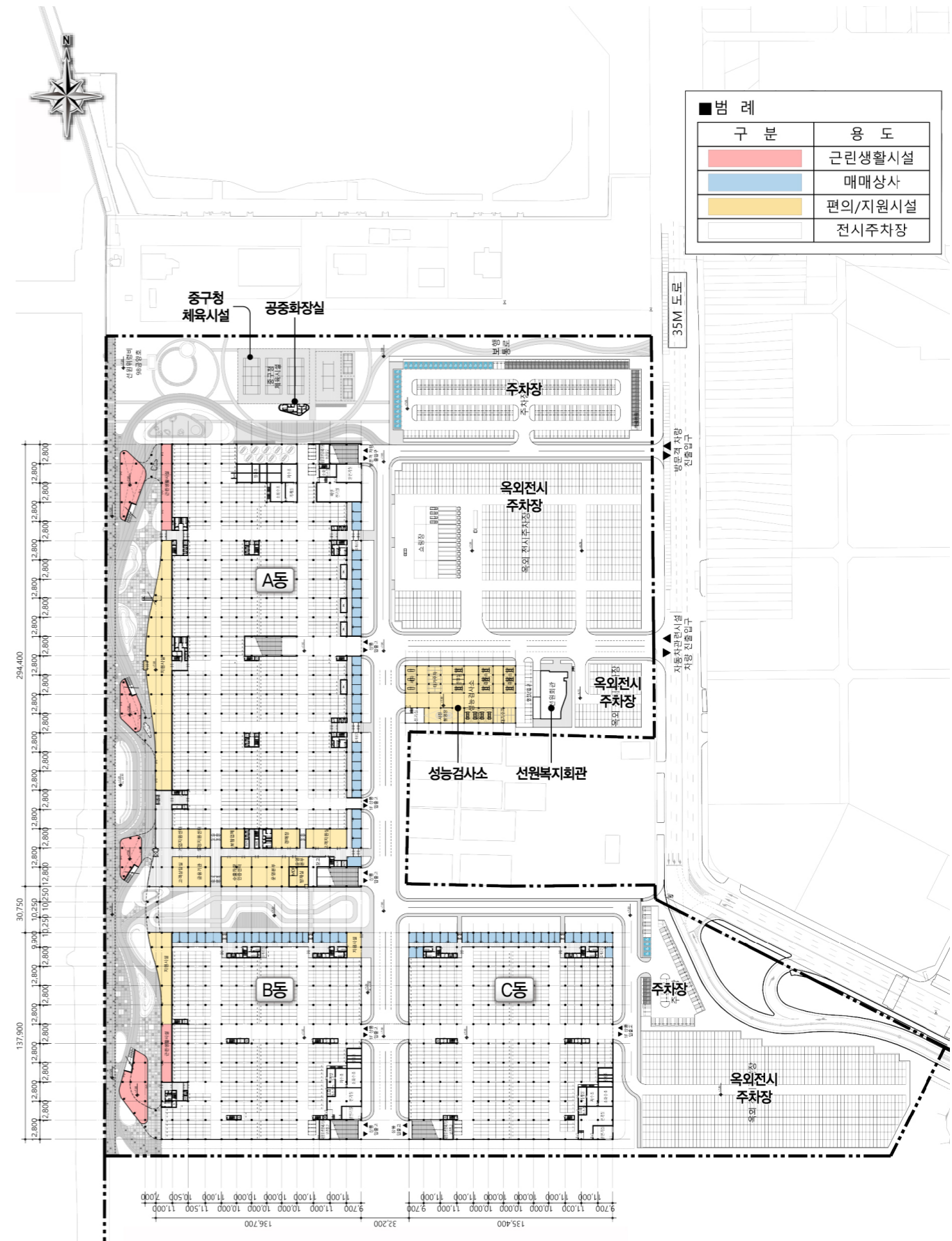
- 사업지구는 지원시설, 녹지 및 기타, 도로로 계획
- 지원시설은 배후유통시설, 전시장 등으로 사업면적의 69.6%로 계획
- 녹지 및 기타는 19.7%로 계획
- 도로는 10.7%로 계획

01 사업의 개요

주요 사업계획

구분		내용	
건축시설		총 3개동(A동 : 지상 6층, B동 : 지상 2층, C동 : 지상 2층)	
기반 시설	조경	면적 : 50,781.71㎡ - 1층:4,3341.50㎡, 2층:3,284.60㎡, 3층:1,258.32㎡, 4층:2,897.29㎡	
	주차장	총 3개소(전체 1,019면 : 북측 315, 중앙 639, 남측 65면)	
	내부도로	진출입구 : 2개소 연장 1,088m(왕복 4차로 및 2차로)	
	부대공	경계울타리, 체육시설, 상수 및 하수, 배수 등	
건축	A동	규모	295m × 137m, 지상6층
		용도	자동차 관련시설, 근린생활시설
		주요시설	자동차 전시주차장 및 매매상사 등
	B동	규모	138m × 137m, 지상2층
		용도	자동차 관련시설, 근린생활시설
	C동	규모	138m × 136m, 지상2층
용도		자동차 관련시설	
사업방법		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	

- 주요 건축시설은 3개동으로 계획(6층 1개동, 2층 2개동)
- 조경은 부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50,781.71㎡로 계획



02 환경현황,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

02 환경현황,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

동·식물상(육상/해양)

현지조사

- 육상 동·식물상 : 3계절(여름철, 가을철, 겨울철) 조사
- 해양 동·식물상 : 2계절(여름철, 가을철) 조사

현지조사 결과

- 식생보전등급 : IV등급 2.2%, V등급 97.8%
- 생태·자연도 : 3등급
- 육상동물상(포유류, 조류, 양서·파충류 등) 법정보호종 발견 안됨
- 해양동물상(동·식물플랑크톤, 조하대 저서동물 등) 법정보호종 발견 안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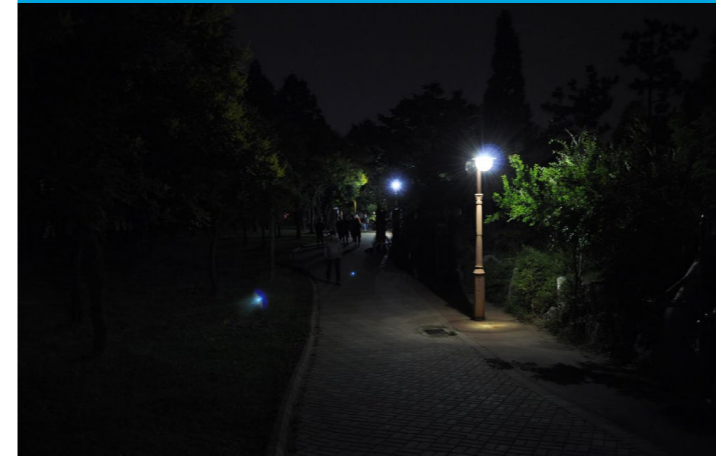
영향예측

- 훼손수목 : 684주 발생
- 식생보전등급변화 : IV, V등급 → V등급
- 생태·자연도 3등급 지역으로 영향 없음

저감방안

- 녹지(40,116.9㎡) 조성
- 조명계획 수립(조명갓 설치, 저강도 조명 설치 등)
- 조류 충돌방지 계획 수립
- 교란식물 관리방안 수립
- 토사유출저감시설 설치(임시침사지, 가배수로 등)

조명갓 설치



해충 발생시 방역



조류 충돌방지시설



교란식물 관리



해양 폐기물 관리



임시침사지 설치



02 환경현황,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

대기질

■ 현지조사

- 조사항목 : PM-10 , PM-2.5, NO₂, CO, O₃, SO₂, Pb, 벤젠(8개 항목)
- 조사지점 및 횟수: 4지점, 2계절(여름철, 가을철)

■ 현지조사 결과

- PM-10(미세먼지) : 12~51 $\mu\text{g}/\text{m}^3$ (기준 100 $\mu\text{g}/\text{m}^3$)
- PM-2.5(초미세먼지) : 7~18 $\mu\text{g}/\text{m}^3$ (기준 35 $\mu\text{g}/\text{m}^3$)
- NO₂ : 0.002~0.013ppm (기준 0.06 ppm)
- : 전 항목, 전 지점에서 국가 및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 만족

■ 영향예측

- 영향예측 항목 : PM-10, PM-2.5, NO₂
- 공사 시 : PM-10 45.1~51.5 $\mu\text{g}/\text{m}^3$ 대기환경기준(기준 100 $\mu\text{g}/\text{m}^3$) 만족
- 운영 시 : PM-10 45.0~51.1 $\mu\text{g}/\text{m}^3$ 대기환경기준(기준 100 $\mu\text{g}/\text{m}^3$) 만족

■ 저감방안

- 공사시
 - 세륜·측면살수시설 설치, 살수차량 운영
 -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및 이동속도 제한
 - 방진망 설치 및 토사 적치 시 방진덮개 설치
 -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및 노후장비 사용 자제
- 운영 시
 - 녹지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정화수종 식재
 - 태양광 패널 설치, 친환경 인증제품, 청정연료(LNG) 사용

살수차량 운영



세륜·세차시설 운영



수송차량 덮개 설치



방진덮개 설치



차량 속도제한



친환경 건설기계



02 환경현황,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

수질 및 해양환경

■ 현지조사

- 조사항목 : 해양수질 COD, SPM 등 28항목, 해양저질 COD, 중금속 등 20항목
- 조사지점 및 횟수: 해양수질 3지점(2계절), 해양저질 3지점(2계절)

■ 현지조사 결과

- 해양수질 : 전 항목 해양환경기준 및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만족
수질평가지수 : II (좋음) ~ V (아주 나쁨)
- 해양저질 : 전 항목 해저퇴적물 관리기준을 만족(As항목 주의기준 상회)

■ 영향예측

- 공사 시
 - 토사유출 발생, 공사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발생
 - 유류사고 발생시 해양영향 발생
- 운영 시
 - 용수 및 오수, 폐수발생

■ 저감방안

- 공사 시
 -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설치, 우기시 토공사 지양, 간이화장실 설치
 - 유류유출방지대책 수립(해양환경)
- 운영 시
 - 수산정수장, 학익배수지에서 용수공급, 우수는 우수관로를 통해 서해로 방류
 - 오수는 기존 합류식 관거를 통해 남향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
 - 비점오염저감대책(초기우수처리시설, 투수성포장, 옥상녹화)



02 환경현황,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

소음진동

현지조사

- 조사항목 : 주야간 소음진동도
- 조사지점 및 횟수: 4지점(1~2계절)

현지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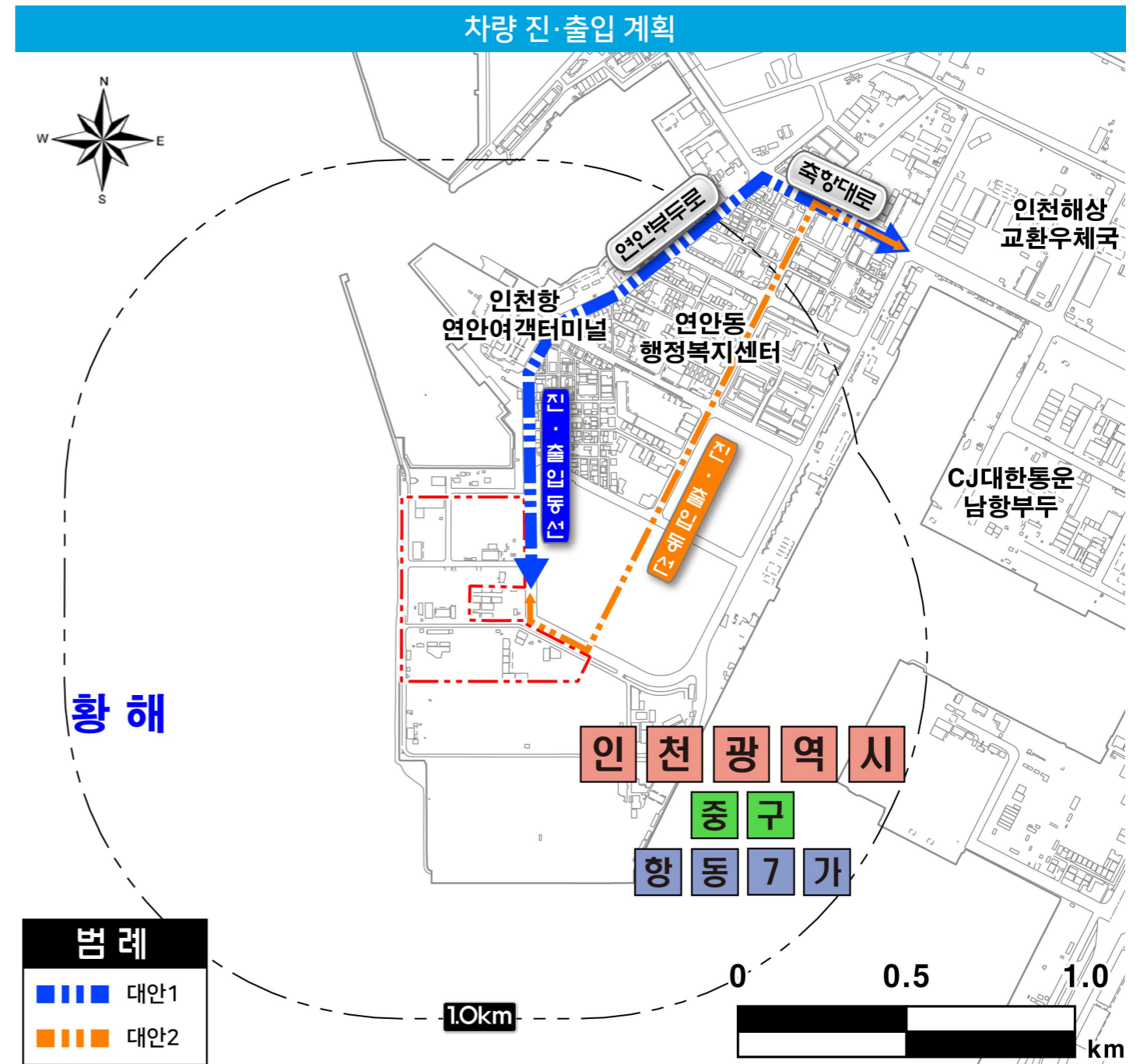
- 소음 : 낮 평균 43~63dB(A), 밤 평균 40~61dB(A)
소음환경기준(낮 65~70dB(A), 밤 55~60dB(A)) 중 밤기준(숙박시설) 상회
- 진동 : 주간 30~47dB(V), 심야 17~41dB(V)
생활진동규제기준(낮 65~70dB(V), 밤 60~65dB(V)) 만족

영향예측

- 공사 시(장비가동 시)
 - 소음 : 42.2~57.5dB(A) 환경목표기준(55~65dB(A)) 만족
 - 진동 : 7.2~41.6dB(V) 환경목표기준 (65dB(V)) 만족
- 운영 시
 - 교통소음 : 주간 46.2~59.5dB(A) 환경목표기준 (55~70dB(A)) 만족

저감방안

- 공사 시
 - 주간작업 실시
 - 공사차량 속도 제한
 - 저소음·저진동 장비 사용
 - 관련법규 및 지침 준수
- 운영 시
 - 주거지역을 우회하는 차량 출입 계획 수립



※ 대안검토를 통해 대안1로 진·출입 계획수립

감사합니다

